

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19년도 영주시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| 차 변 | | 대 변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비 용 | 순이익 | 수 익 | 순손실 |
| 9,427,022천원 | 787,031천원 | 10,214,053천원 | 0천원 |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| 차 변 | 대 변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자 산 | 부 채 | 자 본 |
| 125,545,247천원 | 836,802천원 | 124,708,445천원 |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| 과 목 | 금 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787,031천원 |
| 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(19,675,178)천원 |
| 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| 15,948,500천원 |
| IV. 현금의 증감(I + II + III) | (2,939,647)천원 |
| V. 기초의 현금 | 2,939,647천원 |
| VI. 기말의 현금 | 0 원 |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급 수 전 수 : 24,837전 나. 년 간 생 산 량 : 14,556천 m³

다. 1일 평균생산량 : 39.7천 m³

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수입 | | 지출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제 1 관 상수도사업수익 | 10,214,053천원 | 제 1 관 상수도사업비용 | 9,427,022천원 |
| 제 1 항 영업 수익 | 9,999,473 " | 제 1 항 영업 비용 | 9,273,999 " |
| 제 2 항 영업 외 수익 | 214,580 " | 제 2 항 영업 외 비용 | " |
| 제 3 항 특 별 이 익 | 0 " | 제 3 항 예 비 비 | 153,023 " |

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787,031천원은 상수도 사업수익액 787,031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| 수입 | | 지출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1 관 자본적수입 | 19,085,947천원 | 제 1 관 자본적지출 | 19,872,978천원 |
| 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 | 0 " | 제 1 항 유형 자산 취득 | 19,675,178 " |
| 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 | 0 " | 제 2 항 비유동부채상환금 | 0 " |
| 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 | 16,146,300 " | 제 3 항 기타자본적지출 | 0 " |
| 제 4 항 유 보 자 금 | 2,939,647 " | 제 4 항 예 비 비 | 197,800 " |

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관 | 항 | 사 업 명 | 총 액 | 년 도 | 연 할 액 |
|---|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| | 해 당 | 없 음 | | |

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사 | 항 | 기 | 간 | 한 | 도 | 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해 | 당 | 없 | 음 | |

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| 기 채 목 적 | 한 도 액 | 기 채 방 법 | 이 자 율 | 상 환 방 법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해 당 | 없 음 | | |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879,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2,993,634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10,500천원

제 10 조 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5,928,000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 분 | 종 류 | 명 칭 | 수 량 | 금 액 |
|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| | 해 당 없 음 | | |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19. 4. .

영 주 시 장